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8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6. 5.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령인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·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실무와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와 실무를 일치시키고자 함
- 나.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, 홍보, 포상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정비
 - 고향사랑기부금법, 국가유산기본법 제·개정 내용 반영(안 제3조, 제10조)
- 나. 기타 실무와 상이한 조항 정비
 - 답례품선정위원회 존속기한 삭제(안 제2조제5항)
 - 기금 충당 조항을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정비(안 제10조제2항)
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정비(안 제21조)
- 다.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(안 제24조~제27조)
 -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, 각종 행사, 교류사업, 기부자 예우 및 홍보 물품 제공에 관한 근거 명시
 - 고향사랑기부제 사무 위탁 근거 마련
 -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5. 5. 9.~ 5. 29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작성 대상 아님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수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선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”를 “선정위원회 위원 중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”로 한다.

제2조제4항 중 “제1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”를 “제14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”을 “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1호 중 “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전단 중 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”을 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

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홍보비, 인쇄비,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21조 중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기부제도 활성화)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기관, 법인,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1. 고향사랑기부제 교육, 행사 및 홍보활동
2.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
3.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, 행사 등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, 홍보물품 제작·배포하거나 시상금(상품권 포함)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25조(사무의 위탁) 군수는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 및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26조(포상)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27조(기부자 예우)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기부사실을 증명하는 기부 증서 발급

1.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

2. 군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 기부일부터 1년간 달성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입장료, 관람료 등의 감면

4.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,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포상 및 기부자 예우규정의 적용례) 제26조, 제27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기부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<u>군수</u> 소속으로 달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선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</u>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<u>제1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,</u>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,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,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⑤ <u>선정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</u></p>	<p>제2조(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 <u>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로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선정위원회 위원 중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<u>제14조 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

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
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
한다.

② 군수는 홍보비, 인쇄비 운영 경비 등
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
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
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
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.

<신 설>

제21조(위원의 수당 등) 군수는 위원회에
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
위원에 대해서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
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
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, 그 밖의 필요한
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.

② 군수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
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
의 일부를 홍보비, 인쇄비, 운영 경비
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
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
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
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
할 수 있다.

제21조(위원의 수당 등) -----

----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
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-----

-----.

제24조(기부제도 활성화) ① 군수는
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
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
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기관, 법인,
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
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
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
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

<신 설>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1. 고향사랑기부제 교육, 행사 및 홍보활동
2.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
3.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, 행사 등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, 홍보물품 제작·배포 하거나 시상금(상품권 포함)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25조(사무의 위탁) 군수는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 및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26조(포상)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27조(기부자 예우) ①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기부사실을 증명하는 기부 증서 발급
2. 달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
3. 군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 기부일부터 1년간 달성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입장료, 관람료 등의 감면
- 4.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,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관 계 법 령

□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

제9조(답례품의 제공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(이하 “답례품”이라 한다)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제도의 홍보·연구 및 지원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, 주기적인 조사·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조(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)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7조(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)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

1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5
2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3
3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2
4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: 100분의 10

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”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